

2024년 구례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2024. 5.

목 차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배경	1
2. 2023년 주요성과	2
3. 반성 및 평가	3
II. '24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4
1. 2024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4
2. 2024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4
III.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6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6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7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8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8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9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1
1. 사전컨설팅 활성화	11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14
3. 소송 등 지원	29
VI.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33
1. 소극행정 엄정조치	33
2. 소극행정 신고센터	35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40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40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40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41

□ 적극행정 정의

-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소극행정)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2조

□ 적극행정 제도정비·문화확산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 확대

-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019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제 제정 등 제도 구축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경제 위기극복 지원 등 사례 창출
 - (2021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등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증가
 - (2022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의무화 등 공무원 보호 강화
 - (2023년) 적극행정위원회 면책보호관 지정 등 공무원 보호 강화

□ 인구감소 극복, 복지수요 대응, 경제정책 추진 등 지방행정의 복합화·다양화·전문화에 따른 적극행정 필요성 증가

- 지방의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적극행정적 필요성 증가
- 업무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업무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능력·태도 요구
-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 지역주민의 행정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적극적인 태도와 사명감, 봉사정신 필요

□ 적극행정의 핵심적 제도 운영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공정하고 내실있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 인센티브 지급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반기별 연 2회, 총 8명의 우수공무원 선발 및 4건의 우수사례 선정
 - 무리하게 선발 목표 인원을 설정하지 않고 적극행정 내용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위상 제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팀 신청을 접수하고, 공정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팀원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안 마련·시행
 - 행안부 권고 사항인 파격적 지급기준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기준안 마련·시행
- (적극행정위원회) 총 25명의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원 선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 (사전컨설팅 활성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통해 업무추진의 적법성·정당성을 확보해 실무자의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책임관·면책보호관) 적극행정 확산 및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과 면책보호관(기획예산실장) 제도 지정 운영

□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교육·홍보 강화

- (교육) 조직내 적극행정 인식확대 및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및 사이버 이러닝 교육 수강 독려
- (중점과제 선정) 부서별 1건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강화

전반적인 적극행정 운영체계 및 제도는 확립되어 있으나 공무원 인식 확대 및 조직문화 확산 필요 → 적극행정의 다양한 지원제도 활용을 위한 인식 확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팀별 또는 타 조직간 협업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사례 선정 확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팀 신청시 기여도에 등급결정 기준안 마련·시행
- 실무자의 의사결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감사 등) 강화로 적극행정 추진시 공무원의 부담 경감
- 면책제도, 소송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로 적극행정 참여 유도

Ⅱ

'24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24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구례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태도 요구
 - 일자리·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복합적인 행정 수행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극행정' 필요
- 민선8기 공약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사업 추진 본격화
 - 공약사업 등 미래 지향적인 신규 정책사업 추진 본격화
 - 정책방향 설정, 법적 타당성 검토, 직렬을 벗어난 업무추진 등 실무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제도의 폭넓은 활용 필요

2

'24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 비전 및 목표

비전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	
전략 목표	능동적인 적극행정	• 구례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활력 증진
	걱정없는 적극행정	• 감사, 민원 걱정없는 적극행정 추진 •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활용
추진 동력	조직문화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인센티브 지급 • 적극행정 교육 및 인식 확대
	제도활용 확대	• 면책제도 활용 확대 •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 소극행정 신고센터 등 운영

□ 추진방향

- 적극행정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및 감사 걱정 없는 업무환경 조성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감사 등 적극행정의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실무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면책, 소송 지원 등) 활용도를 높여 감사 걱정 해소
- 활력 넘치는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 및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
 -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기본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추진체계

- 적극행정 책임관
 - (배경) 적극행정은 인사·교육·감사·혁신·법무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책임관 필요
 - (지정·운영) 적극행정 책임관: 구례군 기획예산실장
 - (역할) 적극행정 주요내용 운영(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전컨설팅, 면책 등)
- 적극행정 추진체계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 중점과제 선정

- 선정기간: 2024. 5. 31.까지
- 선정기준
 -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 핵심사업
 - 적극행정 추진결과로 군민의 혜택이 큰 사업
 - 혁신·창의적인 해법으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
 - 복합적인 문제로 군민 고충이 커 해결이 시급한 사항 등
- 선정절차
 - (1차) 부서별 1건 자체 선정(19건)
 - (2차) 1차 선정안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책임관이 선정(3~5건)

□ 적극행정 중점과제 점검계획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7월, 10월, 12월)
- 점 검 자 : 적극행정책임관
- 점검내용 :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된 후 일정한 성과가 창출되어 해당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사례로 신청될 경우 가산점 부여(1점)

□ 운영개요

- 명칭: 구례군 적극행정위원회
- 구성: 25명(2022. 11. 27.자) *임기 3년
 - 당연직(4): 부군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감사팀장
 - 위촉직(21): 민간위원13, 부서장8
- 회의운영: 9명(위원장1, 위원8)
 -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8명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 개최
- 역할, 심의대상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구례군 감사 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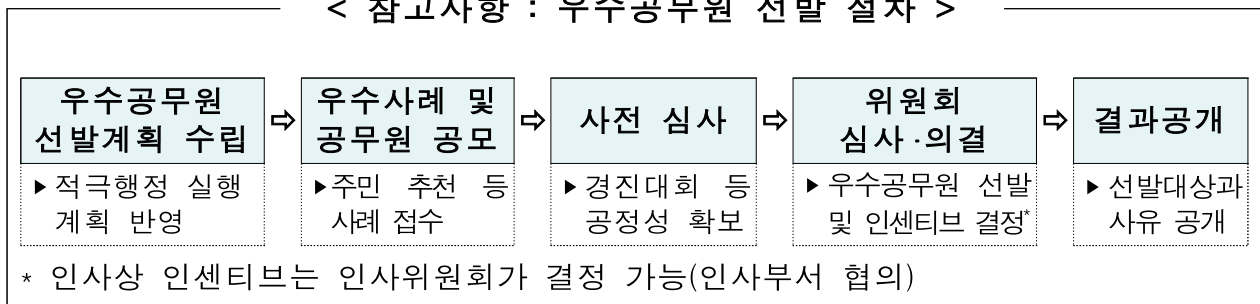
□ 운영 활성화 계획

- (개최시기) 정례회 개최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현안심의를 위해 수시회의 개최
 - (정례회의) 연 2회(5월, 11월) * 실행계획 수립, 우수 공무원 선발 등
 - (수시회의) 연중 * 현안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
- (회의운영) 구성원 25명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안건심의 내용에 맞게 적정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확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개요

- (시기) 연2회 선발(6월, 11월)
- (규모) 연간 00명
 - (기본방침) 선발 목표인원을 정량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적극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
 - 다수의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구성원 전체(팀)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단 개인별 기여도에 따른 등급 재조정)
- (대상) 구례군 소속 모든 구성원(청원경찰, 공무원, 기간제근로직원 등 포함)
 - ※ 적극행정 업무담당자가 기관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가능(적극행정, 사전컨설팅감사, 소극행정 담당자 등)
- (절차) 군민추천, 부서추천, 내부심사, 외부심사(적극행정위원회)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의결

< 참고사항 :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



- (심사기준) 규제혁신, 경제활성화,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 달성에 기여한 정도
 - 중요도·난이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주민체감도, 확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우수하거나 친절·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 중심으로 선발

○ (우대등급) 최우수, 우수, 장려

- 최우수 등급은 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에 한해 등급 부여
- 우수 등급을 5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
- 업무범위가 넓지 않은 실무직 공무원이라도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자세 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경우에도 적극 선발(장려 등급 부여)
- 당장의 성과 창출에 실패했더라도 기존 관행 탈피, 새로운 영역 개척 등 '아름다운 도전'에 대해서도 적극 선발(장려 등급 부여)

○ (기여도에 따른 등급 재조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의 공정성 확보로 제출된 추천서가 우수 또는 장려 등급을 받은 경우 팀원별 기여도에 따른 등급 재조정

- 팀으로 제출된 추천서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기여도 50% 이상	→ 우수
기여도 25% 이상 ~ 50% 미만	→ 장려
기여도 25% 미만	→ 제외

- 팀으로 제출된 추천서가 '장려' 등급을 받은 경우

기여도 25% 이상	→ 장려
기여도 25% 미만	→ 제외

□ **법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행안부 주관)**

- 정부에서 개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월 예정) 참가
 - 군 자체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 행안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등급) 선정하고 해당 인센티브 지급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원칙**

-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전체 우수공무원의 50% 이상(최우수, 우수 등급)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 개인희망 반영

□ 인센티브 부여 기준

우대 등급	파격적 인센티브(50%)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50%)				
	① 특별 승진	② 특별 승급	③ 성과급 최고등급	④ 근평가점	⑤ 교육훈련 우선선발		⑥ 대우 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⑦ 근속승진 기간단축	⑧ 포상 휴가	⑨ 희망 전보
					장기	단기				
	4급이하	6급이하	모든직급	5급이하	모든직급		4급이하	7급이하	모든직급	45급 이하
최우수	○	○	○	○						
우수			○	○	○		○	○		
장려						○	○	○	○	○

-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제2항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요

- (개념)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이 감사기관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감사기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절차) 자치단체는 소속기관·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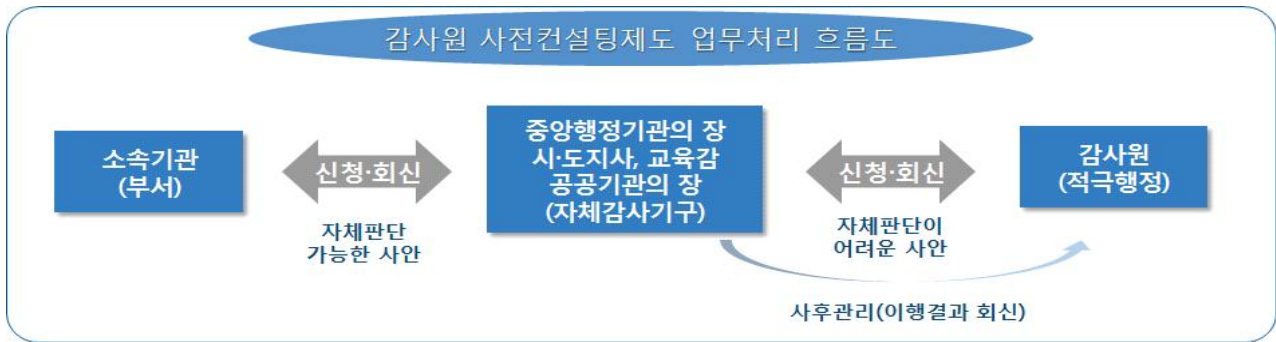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감사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요건 및 처리절차

- (신청주체) 시·도지사 및 교육감
 -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를 거쳐 신청
- (대상업무) 자체감사기구에 컨설팅이 신청된 업무 중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
 - * 법령이 명확한데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 제한
- (처리절차) 컨설팅 신청배경, 자체점검사항 등을 기재한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원에 송부하면 적극행정 담당관이 접수
- (검토·통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원칙을 **가급적 15일로 단축처리** 답변 제공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요건 및 처리절차

- (신청주체) 시·도지사(기초단체는 광역단체를 거쳐 신청)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전컨설팅 신청 의뢰 가능
- (대상업무) 적극행정 지원 사무, 법령 등 해석사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
- (신청절차)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중앙부처에 신청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 시·도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직접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즉시 행정안전부에 신청사실을 통보
- (처리절차)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소속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되, 소관 법령 등의 해석만 요청한 경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
 -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지방자치법 제166조)
-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5일 이내 처리
 - 법령등 해석만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로 한차례에 한해서 연장가능

※ 타 부처에서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통보

- **(효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 면제

< 지방자치단체 감사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 운영 >

- **(개요)** 정부합동감사시 시·군·구, 시·도의 컨설팅 신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사전컨설팅감사의 효율성 강화 및 활성화 유도
- **(절차)** 정부합동감사 시 참여부처 합동 창구 운영,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처리

□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정착 및 활성화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신청주체/대상)** 자체감사 대상기관* → (자체)감사기구의 장
의견제시요청
 - * 자체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을 관리 감독 기관에서 위임하여 집행
- **(대상업무)**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항 및 그밖의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 사항*
 - * 사전컨설팅 제도 취지상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제한 없이 운영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신청대상을 규제 관련 업무로 한정하여 운영
- **(효력)**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감사단계), 징계의결등 면제(징계단계)
 - ※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여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검토·통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신청일로부터 ‘15일 내’ 답변 제공*
 -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 전담조직 등 운영기반 확충을 통해 기존 30일 이내 처리원칙을 15일로 단축(21년 개정)
- **(활성화 노력)**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가 사전컨설팅감사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권장

-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공공감사정보시스템 통합 DB)을 통해 공유되는 중앙·지자체·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사례들을 적극 참고·활용
- (의사결정 지원) 타 기관(중앙·지자체 등)이 사전컨설팅감사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여 해당 법령의 담당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하여 요청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 필요시 법제처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처리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증보판' 활용
- 10일 이내에 회신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예상 회신시기를 요청기관에 통보
-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기관)의 법령 담당 부서들이 타 기관의 사전컨설팅 관련 법령해석 요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1 징계요구 등 면책

◆ 근거규정 : 「감사원법」 제34조의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 제33조 ~ 제4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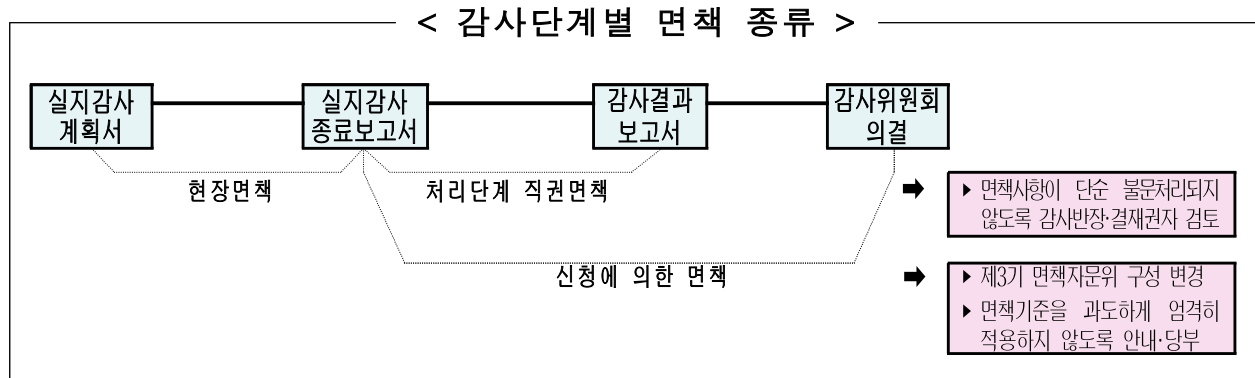
□ 추진배경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 (개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감사원법 제34조의3)
- (종류) 신청에 의한 면책, 직권 면책(현장 면책 포함)으로 구분

- (현장 면책)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실시 감사 종료 전 감사마감회의에서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처리단계 직권 면책)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무처 검토단계에서 면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신청에 의한 면책) 실시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 여부 검토



- (면책기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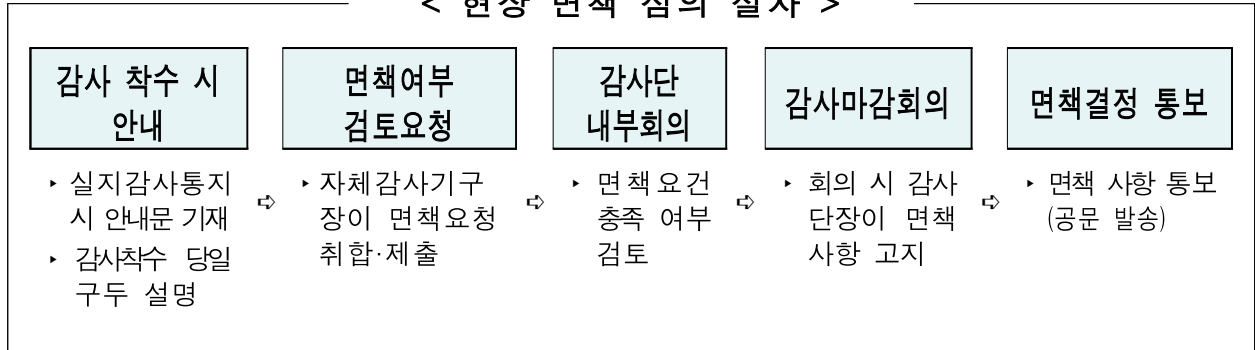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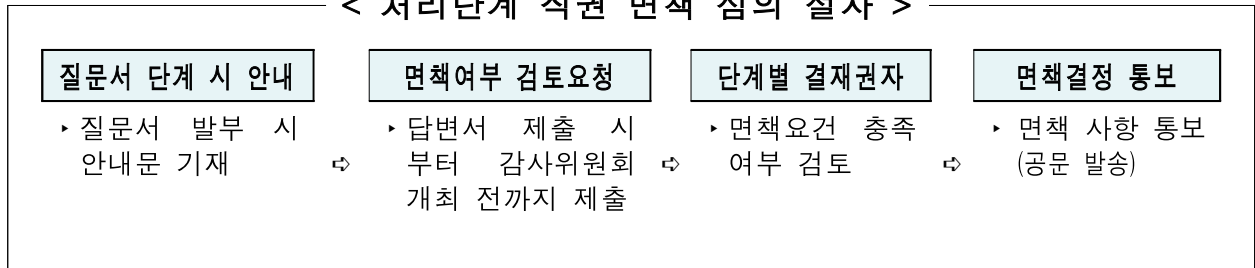
- (현장 면책 절차) 자체감사기구에서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감사단에 제출하면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여부 검토
-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단장이 면책 사항을 통보하여 조기 면책

< 현장 면책 심의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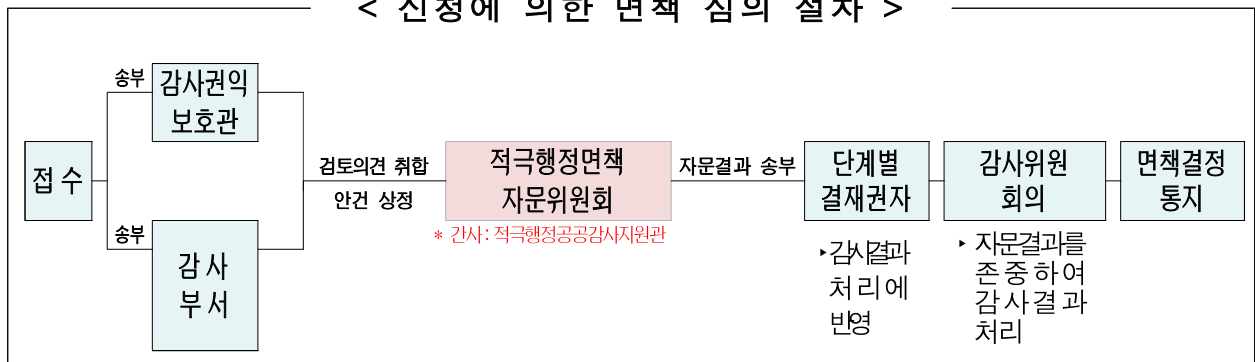
- (처리단계 직권면책 절차) 실지 감사종료보고서 작성 이후 사무처 검토 단계에서 면책요건 충족여부 검토

< 처리단계 직권 면책 심의 절차 >



- (신청에 의한 면책 절차) 면책신청 접수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책기준 부합여부를 심의

< 신청에 의한 면책 심의 절차 >



사례 1 국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인정한 면책 사례

- ◇ (업무추진 상 문제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면서 주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
 - ⇒ (면책사유)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군도를 시급히 개설해야 하는 상황
- ◇ (업무추진 상 문제점) 00공단은 승강기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견기업인 기존 승강기 설치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위반
 -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승강기 설치공사 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
 - ⇒ (면책사유) 승강기 이용객 편의와 안전 등 공익을 위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점, 기존 업체가 개선공사를 맡지 않으면 새 부품과 기존 부품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면책사유로 인정

사례 2 지역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을 인정한 면책 사례

- ◇ (업무추진 상 문제점) 00군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보관창고 신축을 허가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만 해당 구역 내 건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 ⇒ (면책사유) 농산물 수확시기를 앞두고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를 신속히 추진한 점을 면책사유로 인정

□ 정부합동감사 등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 (개요) 지방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
-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
- (면책기준)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동일
 -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 제외
- (면책 절차) 면책여부 심사를 위해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사안이 간단한 경우 감사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결정하며, 복잡한 사안은 감사 후 적극행정면책심의회를 통하여 면책여부 결정

< 적극행정위원회의 면책 건의제도 >

- ▶ **(배경)** 공무원이 본인에 대한 면책을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우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적극행정 여부 판단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 ▶ **(내용)**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명의로 면책 건의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 제5항, 제6항)
- ▶ **(효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자문위원회(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심의회(행안부) 등으로 안건 상정 및 회신,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례 1 정부합동감사(행안부의 지자체) 면책 사례

- ◇ **(업무추진 상 문제점)** ○○천 정비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정에 맞춰 구입하지 않고 선 구매하여, 잔여 물량을 3년간 야적 관리하는 등 업무 소홀
 - ※ 잔여 물량 내역[철근 65톤, 호안블럭 486개] / 84백만원 상당
- ⇒ **(면책사유)** 강우 시 범람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 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잔여 물량을 다른 소하천 공사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해당

사례 2 정부합동감사(행안부의 지자체) 면책 사례

- ◇ **(업무추진 상 문제점)** 00군은 묘지 수급 안정을 위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2개월 전에 착공함
 - ※ 실시계획 인가 신청(17.6.) → 착공(17.10.) → 실시계획 인가(17.12.)
- ⇒ **(면책사유)** 실시계획 인가 前 일부 착공한 사실을 있으나, 착공 내용이 준비 성격의 업무이고, 실제 착공은 실시계획 인가 후 진행되었으므로 경미한 과실로 판단됨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가능하며, 면책기준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의 적극행정 면책과 동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운영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자체감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결정을 한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며, 10일 내 감사원에 통보
 - 적극행정 면책 확대를 위하여 자체감사규정 내 운영절차 간소화 필요
- 자체감사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5항)

- 다만, 해당 공무원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사 례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행정을 인정한 면책 사례

- ◇ (업무추진상 문제점) 00군은 창엽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지방재정법」과 달리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
-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 ⇒ (면책사유) 공사의 조기 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면책사유로 인정

□ 적극행정위원회의 면책건의

- (개요) 적극행정위원회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원법」 제 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하는 제도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징계요구 등 면책)

-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 (요청방법)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각 기관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 요청
-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서식2)

① 현장면책 요청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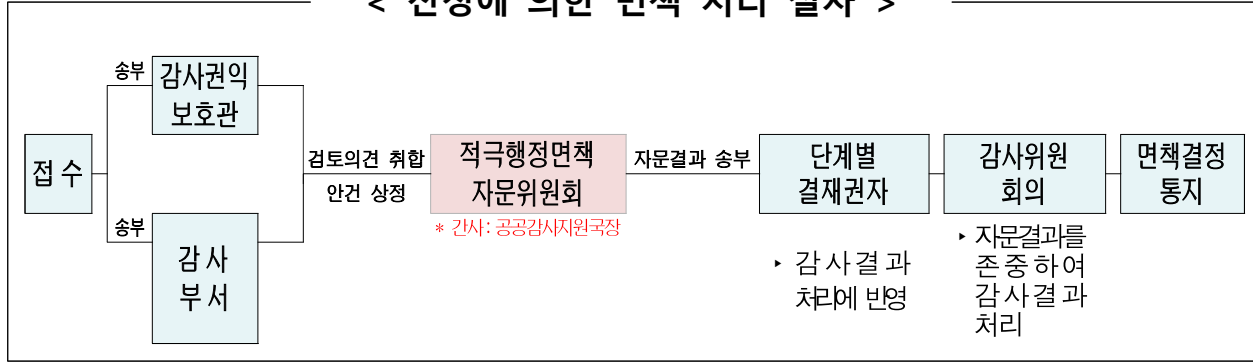
- ❖ 현장면책을 요청한 공무원은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 기구의 장에게 <면책 건의서> 등 제출 →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장에게 송부 및 검토요청
 - ▶ (현장면책 절차) ①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 검토 요청서>(서식4)을 작성 → ②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감사단장에 제출 → ③감사단 내부회의 거쳐 면책여부 결정
- ❖ 감사단장은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검토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면책결정 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② 현장면책 요청기한이 지난 경우

- ❖ '신청에 의한 면책'을 요청한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3일 전까지 감사원 적극행정 총괄담당관실에 <면책건의서> 등을 제출**
- ❖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때 <면책건의서>를 제출하거나, 늦어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제출 권장**
 - ▶ (신청에 의한 면책 절차) ①공무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 <적극행정 면책 사유서>를 작성 → ②감사위원회의 3일 전까지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에 제출 → ③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감사결과 결정

- **(안전상정)**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안전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후 신속하게 적극행정위원회에 안전 상정
- **(위원회 개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일정 및 심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개의를 위해 노력(서면회의 방식 등 활용)
 - 위원장은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원을 포함
- * 실시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까지, 종료된 경우에도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
- **(심의·의결)** 적극행정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감사원법」 제34조의3 등에 규정된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의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책건의 의결
 - 면책건의 의결 시 <적극행정 면책 건의서> 및 <심의 결과서> 발급 (서식3)
- **(결과통보)** 전담부서는 면책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즉시 의결사항 통보
 - 면책건의 의결시 <면책건의서> 등을 요청한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면책건의 의결 사실 통보
- **(감사원의 처리)**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면책건의서> 등을 접수시점에 따라 '신청에 의한 면책' 처리단계별 검토자에게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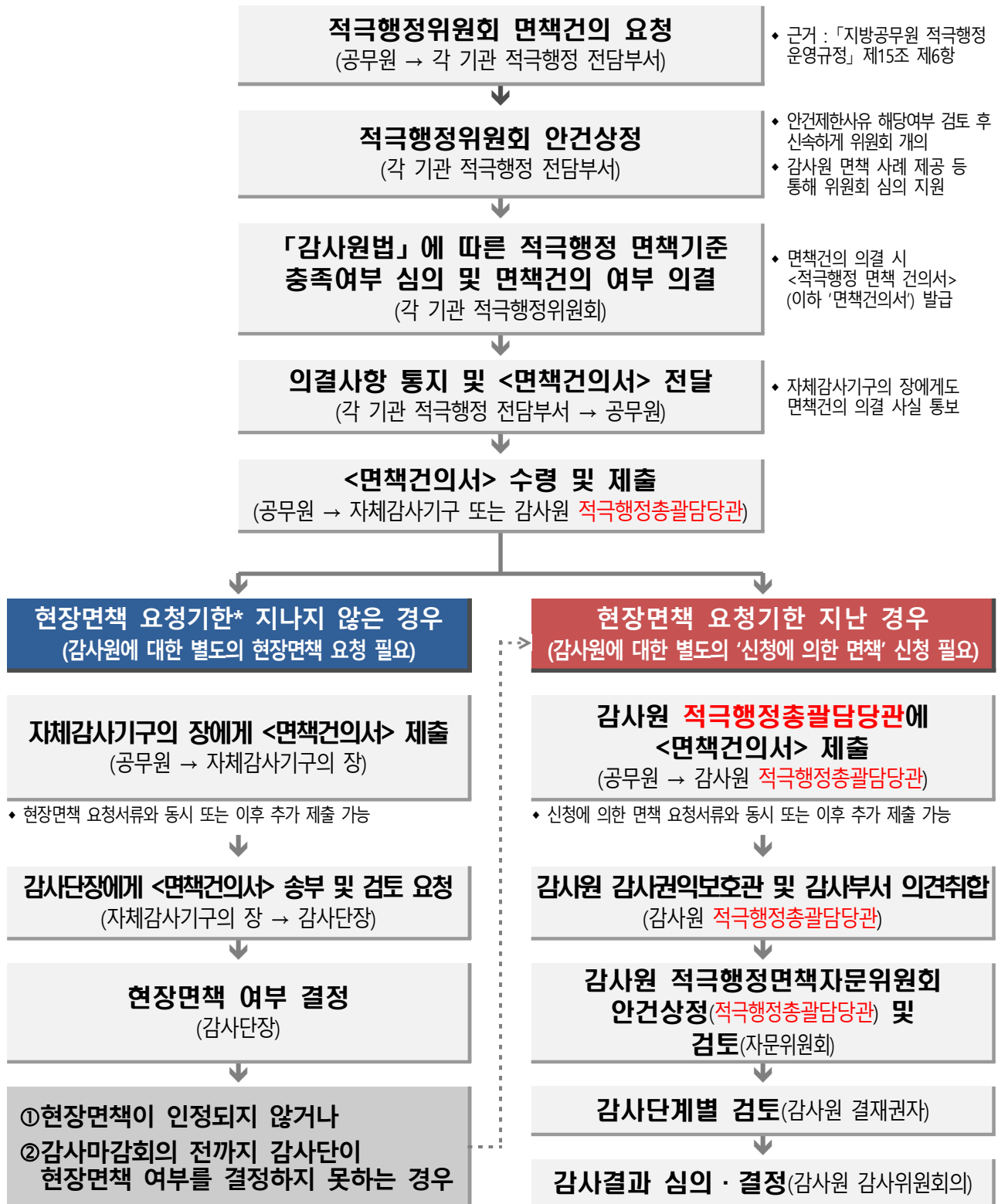
< 신청에 의한 면책 처리 절차 >



- (감사권익보호관·감사부서) 감사권익보호관(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및 해당 감사부서는 면책신청에 대한 검토 시 <면책건의서> 참고
-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감사원 외부위원(30명 이내)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면책기준 부합여부 심의 시 <면책건의서> 검토
- (결재권자) 적극행정지원과는 감사단계별 결재권자 또는 주심 감사위원에게 <면책건의서> 및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송부
- (감사위원회) <면책건의서> 및 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고려하여 감사결과를 심의하고, 면책결정 시 신청인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건의서> 접수 및 검토 사실에 대하여 적시

<적극행정 면책건의 제도 운영절차>



* 현장면책 요청기한 :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기한은 감사위원회의 개회 3일 전까지이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때 <면책건의서>를 제출하거나, 늦어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회 전까지 <면책건의서> 제출 필요

□ 도입 배경

-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기구 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상의 편차가 커 면책제도의 실효성 및 공무원들의 신뢰도 저하
- ⇒ 지자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존의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보완 노력 필요

□ 도입 목적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면책 신청 시,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면책 신청 및 심사 과정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
-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공무원 신뢰도 제고

* 이하 '면책보호관'이라 함

□ 면책보호관 정의 및 지원대상

- (면책보호관 정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의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 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감사원·상급기관 감사 면책 신청 시 지원 및 권익을 보호하는 공무원
- (면책보호관 지원대상)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만 면책보호관을 지원하며,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적극행정 면책건의서' 및 '심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붙임 2 참조)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⑥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면책신청 지원대상 판단기준

- ❖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 건의를 심의·의결하지 않은 공무원 : 지원 불가
- ❖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 건의를 한 경우에도 자체감사 시 면책 신청 : 지원 불가

□ 면책보호관 지정

○ (지정) 구례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기획예산실장

- 해당 지자체 내 규제개혁·법무·적극행정 부서장 중에서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지자체장이 지정

면책보호관 지정 시 유의사항

- ❖ 인사발령시 후임 부서장이 권한을 자동승계하나, 지자체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리·면책 보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대상자 중 감사 관련 이해도 및 법률 등에 식견이 높은 자로 변경 지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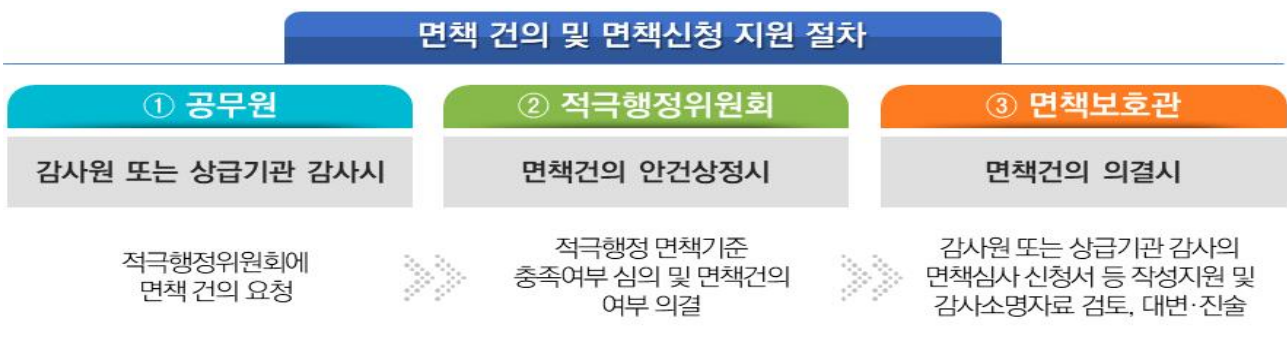
□ 면책보호관 역할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상담·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심사 신청서(감사 소명자료) 제출 전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검토·자문하고, 면책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진술을 통해 면책 신청인 보호
- 기타 면책제도 안내 및 법률정보 알선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

< 면책신청인 보호제도 사례* >

- ❖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위촉('15.9 신설)
 -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감사 지적내용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대변·진술하는 역할 수행
- ❖ (한국 마사회) 감사처분 심의 시 면책 신청인이 부장 이상 경력자 또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운영
- ❖ (기술보증기금) 피감사자의 항변권 및 변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사내 직원이 관계직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 디펜더 제도 도입

* 감사연구원,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태 분석, '21.12.



3 징계 등 면제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제17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

□ 추진배경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제한하고, 징계의결 전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 면제

- (개요)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 ※ 징계 면제 이외에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는 징계감경 가능(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 (요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	
1 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기 존	개 정('19.6.25.)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사례

적극행정 징계면제 인정 사례

◇ 국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한 공무원 보호

- A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경징계 요구를 받았음
- 그러나, ① 주차장 공사가 공익 목적인 점, ② 제대로 허가절차 이행시 허가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인 점, ④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불문'으로 의결함

◇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공무원 보호

- B지자체는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기술지원 약속서를 제출하고 3회 이상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계약해지 요청을 수요기관에서 하였으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
- 그러나, ① 수차례 내·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② 지속적으로 소명을 요구하고, ③ 계약 해지 외에 대금감액 조정이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불문'으로 의결함

사례

적극행정 징계면제 불인정 사례

◇ 잘못된 업무처리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은 면책 불가

- C지자체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용역업체 입찰절차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용역을 의뢰하였음. 또한, 납품 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용역업체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됨
- 해당 지자체는 공사 조기완료와 연말 재정 집행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주장하였으나, 도로 유지보수 관련 용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문란케 하여 '감봉 1월' 처분을 받음.

◇ 본연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은 면책 불가

- D기관은 부정수급한 급여금을 환수하는 업무를 태만히 하여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3,7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해당 기관은 대상자가 부정수급을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급여금 부정수급 환수 등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견책' 처분을 받음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감사원·정부(행안부)·시도 및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3항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제16조제3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4항

□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 사전검토 의무화

-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의견을 징계의결 요구시 제출하는 ‘확인서’ 서식에 기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5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지 서식

□ 적극행정 징계면제 소명절차 구체화 및 심의 의무화

-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면서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를 기재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적극행정 징계면제를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하여 당사자에게 통보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및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추진배경

-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 활성화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

□ 구상권 행사 제한

- 「구상권 행사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19.7월), 각급 검찰청은 구상권 행사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극행정으로 인한 손해발생인지 여부를 필요적으로 판단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
 -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상권 불행사 시(배상금 지급액 5천만원 이상 사건), 적극행정으로 인한 구상권 불행사인 경우에는 이를 명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 소송 등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징계·소송 등 요구된 경우 지원을 해야함(의무)
 -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 면제 요건 충족 여부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제2항 및 제3항

-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참고) 규칙안」 (23. 1월, 공문시행)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체 규칙 제정

<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지침등에 관한 (참고) 규칙안 주요 내용 >

- ▶ (목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
- ▶ (지원체계)
 - 적극행정 책임관 :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지원 전반을 관리
 - 적극행정위원회 : 지원여부, 지원시기, 범위와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사건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여부 심의·의결 가능
- ▶ (지원내용)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고소·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민사상 책임 소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징계등의 요구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원절차)

절차	내용
신청 (적극행정 공무원)	❖ 지원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필요서류를 제출 ① 지원 신청서 ② 징계, 소송 등과 관련된 서류 - (징계절차 소명)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 (소송 등 지원)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③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⑤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지원신청 접수·안내 적극행정 책임관	❖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해야 함 -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적극행정	❖ 적극행정 책임관이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

절차	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 ↓ 감사부서의 장	-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책임관에게 통보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위원회 상정·심의	❖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상정 -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상정 ❖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지원·집행 적극행정책임관 ↓ 적극행정공무원	❖ 적극행정책임관은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신속하게 집행 ❖ 지원받은 공무원은 14일 이내 에 선임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 적극행정공무원이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함
보고	❖ 적극행정공무원은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사안에 따라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 가능

- ▶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결정 취소 가능
- 이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함
 -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를 통해 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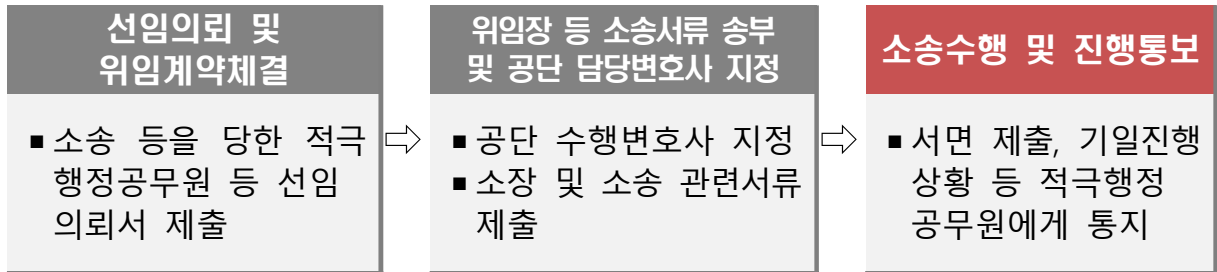
※ 퇴직공무원 지원 시

- 퇴직공무원은 퇴직기관에 소송지원을 신청하고, 현직자와 동일한 소송지원절차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소송을 당한 업무당시 재직기관(A부처)과 퇴직기관이(B부처) 다를 경우,
 - 퇴직공무원은 퇴직기관(B부처)에 소송지원을 신청, 신청을 받은 퇴직기관(B부처)의 적극행정책임관은 업무당시 재직기관(A부처)에 의견을 들어 지원여부 심의·의결 할 수 있음

○ 정부법무공단 법률지원 범위('21.4월, 민·형사로 확대)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형사상 고소·고발(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함) 지원

◇ 정부법무공단 법률지원 시 절차



※ 정부법무공단 적극행정공무원 소송지원 부서 : 법무팀(02-2182-0070)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 소극행정 엄정조치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각 지자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엄정하게 조치 필요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 주의 또는 경고 조치시 포상·해외연수대상자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등 지자체별 관련 지침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인사상 불이익 부여)
 -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 관련 감독자도 문책(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2항)
 -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타 직위로 전보,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등 인사조치 의무화
 - 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에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하여 관리책임 강화
 - * 각급 지자체에서는 부처별 성과평가 또는 성과급 등급 결정 기준 마련 시

‘부서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장의 책임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성과급 평가점수 감점, 등급조정(하향), 최하위등급 요건 추가 등 적절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 아래의 행위 등으로 인해 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②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소극행정으로 판단 가능

구 분	정의 및 판단기준(예시)
적당편의	■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써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활용 안내】

-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관할 징계위원회가 소극행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공무원 주요 비위사건 처리지침」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합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여부 등을 판단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된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적합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여부 등을 판단함

□ 소극행정 점검 강화

- (지자체 자체점검) 17개 시·도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민원처리의 적극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소극행정 행태 점검 실시
- (모니터링) 권익위 및 소관 지자체 감사부서에서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 지연, 조치사항 이행 등을 수시 점검

2 소극행정 신고센터

□ 설치 배경

-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19.3.22.)하여 소극행정 민원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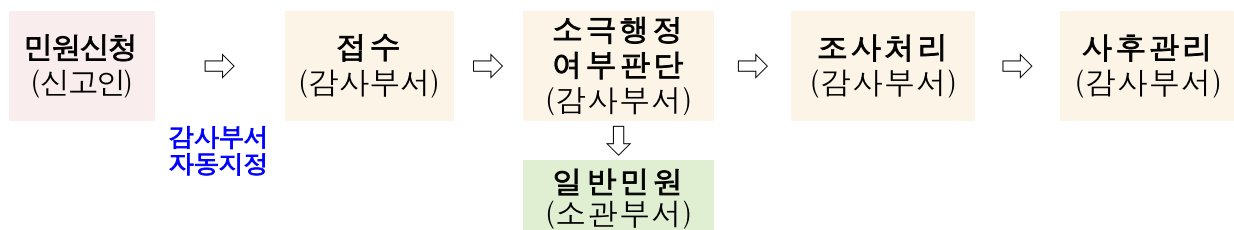
□ 설치근거(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 소극행정 신고 접수처리 개요

- 신고인이 지정한 소관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소극행정 신고 처리절차 >



□ 소극행정 신고 접수·처리 세부절차

① 소극행정 신고 : 신고인

- (신고사항) 소극행정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 (신고방법) 신고인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
 - ※ 실무상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고는 가능

② 소극행정 접수 : 감사부서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신고인이 지정한 소관기관의 감사부서로 자동지정
- 각 기관의 본부·본청 감사부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소극행정 신고 처리부서로 지정 가능
 - ※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직제 등을 반영해 ‘감사부서’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가능 (자체 기준 적용 시 권익위에 사전 통보)

③ 소극행정 여부 판단 : 감사부서

-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거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4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음

제8조(신고의 처리) ④ 감사부서는 소극행정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거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소관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된 신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1. 신고자가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2.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3.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4.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 ※ 다만 소관부서나 피신고자가 처리한다면 신고인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거나, 소극행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④ 소극행정 민원의 조사·처리 : 감사부서

-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 소극행정 신고 내용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처리기간

❖ 일반 사안(14일) 또는 현장조사 등 필요사안(14+7일 범위 내 연장) 여부를 검토 후 처리기간을 설정

- 다만 소극행정 신고 내용,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서 소관 행정기관에서 처리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처리기간)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기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권익위에서 소관기관으로 이송되는 소극행정 재신고 건의 경우, 처리기간은 소극행정 신고 처리기간 규정(지침 제9조) 준용

⑤ 사후 관리

- 소극행정 민원을 처리완료하는 경우, 처리구분 항목(해결, 종결, 취하, 기타 등)을 신중하게 국민신문고에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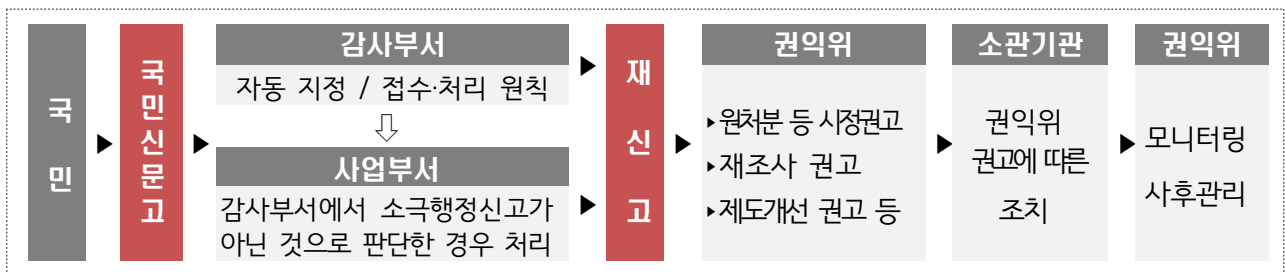
처리구분 *	해결	☒ 해결 ☐ 기타
	종결	☐ 민원인 불명 ☐ 민원요지 불명 ☐ 민원처리예외 ☐ 신고전환 ☐ 기타 -- 예외 항목 선택
	취하	☐ 신문고취하 ☐ 취하원제출 ☐ 기타
	기타	☐ 미연계기관이송 ☐ 선정기원 및 단순의견 개선 ☐ 기타

- 감사부서 처리여부, 소극행정 해당여부 등을 정확하게 입력

소극행정 *	감사부서 수용여부	※ 민원을 회신하는 처리자의 부서가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소극행정 해당여부	※ 민원의 신청내용이 아니라 민원처리자가 민원을 검토하고 처리한 결과를 근거로 소극행정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한 후 소극행정 처리구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소극행정 처리구분	☐ 적당 편의 ☒ 탁상 행정 ☐ 업무 해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 소극행정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재신고
 - (권익위) 재신고 사항을 접수·검토 후, 감독기관 또는 소관기관에 재조사 요구, 업무처리 개선 등을 권고
 - ※ 필요시 소관 행정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검토결과 권익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
 - (해당기관) 소관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부서는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 재조사, 개선조치 등 처리 후 권익위 및 신고인에게 결과통보
 - ※ 권익위에서 별도의 권고 의견 없이 재신고를 이송 받은 소관기관에서는 소극행정 신고 접수·처리 절차(①~⑤)에 따라 처리



□ 유의 사항

- 소극행정 신고 처리 매뉴얼 및 소극행정 민원답변 가이드(국민신문고 사용자화면에 제공)를 준수하여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
 - ※ 기본답변양식, 다부처민원 답변양식, 감사부서 외 타부서 처리 답변양식 등을 제공
 - 특히, 민원을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사업부서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감사부서 미처리 사유'를 반드시 입력

< 답변가이드 - 감사부서 외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시·도/시·군·구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1AA-1401-00000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신고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등의 이유로 부득이 감사부서가 아닌 ▲▲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 미처리 사유 반드시 입력!! ***

3.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4.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 검토 근거로 관련 법령 등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도/시·군·구 ○○○과 홍길동 사무관(☎044-2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가이드 - 기본답변 양식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 검토 근거로 관련 법령 등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도/시·군·구 △△△과 홍길동 사무관(☎044-2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관리 철저

- 신고자 신분 비밀 누설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원처리법」 등
-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 필요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적극행정 기본 직장교육 실시

- (시 기) 연간 1회(7~8월중)
- (대 상) 전직원
- (방 법) 인사혁신처 표준강의안을 활용하여 기본 직장교육 실시

□ 이러닝 교육 실시

- (시 기) 연중
- (대 상) 전직원
- (방 법) 전 직원이 적극행정 이러닝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장 안내 및 독려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내부게시판 및 적극행정 온 등에 홍보
- 발굴된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경진대회 등 참가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확산

-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지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내부 홍보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타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내부게시판에 지속 홍보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구례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확산

- 구례군 적극행정 사례를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타 지자체에 홍보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 참여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군민 추천제 도입

- 반기별 선발되는 우수공무원 심사 시 부서추천과 함께 군민 추천제 도입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유함으로써 군민들의 공감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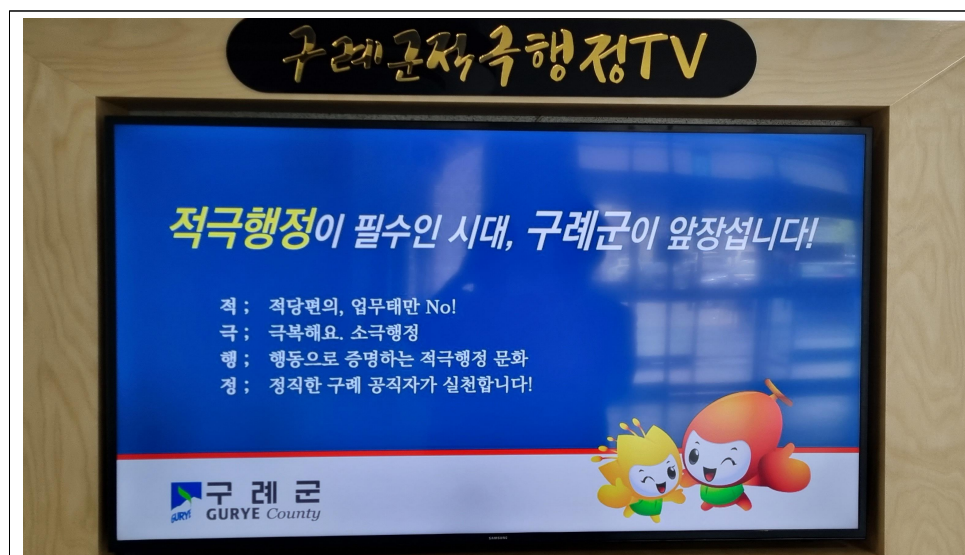
○ 군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에 적극행정 홍보 문구 노출

<문구 예시>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구례군이 실천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TV 상시 운영으로 적극행정 필요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소개

<적극행정 TV 예시>



□ 적극행정 온(on) 활용

- 군 누리집에 적극행정 온(on) 링크 연결
-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범정부통합자료실 게시

서식 2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등 (공무원→적극행정위)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1. 제 출 자	주 소			
	지 방 자 치		직 명	
	단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면책건의 요청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적극행정면책 건의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신청인 (인) 첨부서류 : 1. 적극행정면책 건의 사유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적극행정면책 건의 사유서

(「감사원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건의 요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 타			

※ 감사원법 제34조의3 등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자문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자문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첨부서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신청 **감사담당관** 성명
 ○○시·도/시·군·구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3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등 [적극행정→공무원→감사원]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1. 요청자	지방자치단체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2. 면책건의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 적극행정위원회의 적극행정면책건의 주요내용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합니다. 20 . . . 첨부서류 : 1.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2.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사본) ○○○시도 적극행정위원회 인 감사원 귀중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44조(적극행정면책 건의)의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i>예정일</i>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증빙자료 첨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기 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작성 방법

1. 감사원 감사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2. 감사원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3.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8조제3항(안건의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1. 요 청 자	지 방 자 치		직	급
	단 체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면책건의 요청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내용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8조제3항(안건의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심의일자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종합 의견

년 월 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8조제3항(안건의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서식4

감사관련 소명서 등 [공무원→감사원]

감사 관련 소명서

1. 제출자	주 소			
	지방자치단체명		직명	
	성명		전화번호	
	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 소명자료제출 취지 (해당사유 모두 표시)	사실관계 상이() / 새로운 증거() / 법령해석 차이() / 적극행정면책() 정상참작 등 기타()			
4. 소명 요지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적극행정 면책)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_____ (인) 첨부서류 : 1. 대리인 위임장 2. 소명자료(매) 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감사원 귀중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 را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39조제1항 (감사소명자료의 제출)의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5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 타			

※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39조제2항 (감사소명자료의 제출)의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39조제2항 (감사소명자료의 제출)의 별지 제3호 서식

서식5

적극행정 소송 등 지원신청 등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담당업무	성 명 :	
신청내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 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시·도 (시·군·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참고)규칙안 별지 제1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시·도 (시·군·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참고) 규칙안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 ○○시·도 (시·군·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참고)규칙안 별지 제3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 ○○시·도 (시·군·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참고)규칙안 별지 제4호 서식